

공 고

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 2012 - 114호

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09월 24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53조 및 『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』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,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,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.

1. 관련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등

2. 게시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3. 관련사항 문의 :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

(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☎02-750-2945)

붙임 : 공시송달 대상 1부.

공 시 송 달 대 상

번호	납부자명	납부자등록번호	납부금액 (원)	최 초 결의일자	소 재 지
1	㈜쇼킹온	110111-4422***	5,000,000	2012.7.12	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길 5, 3층
2	㈜와이제이그룹	180111-0762***	8,000,000	2012.7.12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7-16 이오스플라자 2층
3	대상커뮤니케이션 (사업주 : 윤태이)	301-23-96***	27,300,000	2011.10.14	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25-1

※ 납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5%가산금이 부과된 독촉고지서가 발송되며, 이
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.2%(최대 60개월)의 증가산금이 부과됩니다.